

# 회 칙

## -한국트라우마치료교육연구회-

제정 2015년 7월

개정 2019년 12월

- 제 1장 총칙
- 제 2장 회원
- 제 3장 임원 및 직무
- 제 4장 회의와 기능
- 제 5장 분과연구회
- 제 6장 재정
- 제 7장 지방분회
- 제 8장 보칙
- 제 9장 부칙

## 제 1장 총칙

### 제1조 [명칭]

본 학회의 학회원으로 등록된 자

### 제2조 [목적]

본 학회는 트라우마 치료 임상가 연구와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, 관련 임상실습과 수련을 위한 임상감독과 자문을 제공하며, 신체중심 트라우마 치료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홍보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.

### 제3조 [소재지]

본 학회의 사무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### 제4조 [사업]

본 학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1) 신체중심 트라우마 치료 및 교육 분야의 학술 연구
- 2) 신체중심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
- 3)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 교육 및 훈련감독
- 4) 신체중심 트라우마 치료에 관한 연구발표, 세미나 및 강습회 개최
- 5) 학술지, 소식지 및 관련 도서 발간
- 6)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교류

7)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 제 2장 회원

### 제5조 [회원의 종류]

본 학회의 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고,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서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
### 제6조 [자격]

정회원: 본 학회의 교육을 이수 한 전문치료사로 학회 규정 자격유지 조건을 충실히 이행 한 자

준회원: 심리치료, 트라우마 치료, 신체중심 트라우마 치료에 관심을 가지는 자

### 제7조 [회원가입]

본 학회에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절차를 필하여야 한다.

### 제8조 [회원의 권리]

본 학회의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, 준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, 주관,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.

### 제9조 [회원의 의무]

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- 1) 본 학회의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2)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며,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3) 본 학회가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### 제10조 [회원자격의 상실]

본 회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. 단 제명에 관한 절차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

## 제 3장 임원 및 직무

### 제11조 [임원의 종류와 정수]

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회장 1인

수석연구이사 2인 이내

연구이사 4인 이내

감사1인

#### 제12조 [임원의 직무]

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한다.

수석연구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연구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.

감사는 본 회의 회계와 업무에 관하여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
총무이사는 본회의 업무 처리를 조력한다.

#### 제13조 [임원의 선임]

회장, 수석연구이사,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,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. 회장, 수석연구이사, 감사에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2개월 이내에 보선하며, 총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.

#### 제14조 [임원의 임기]

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는 후임자가 취임되기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#### 제15조 [고문 및 자문위원]

본 학회는 고문 및 자문위원인을 둘 수 있다.

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회장이 위촉하며, 명예회원으로 한다.

## 제 4장 회의와 기능

#### 제16조 [회의]

총회, 이사회, 상임운영위원회로 한다.

#### 제17조 [총회]

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.

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의장이 된다.

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한다.

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정회원 3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
총회의 참석인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인정한다.

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- 1)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
- 2)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3) 회장, 수석연구이사, 감사의 선출

- 4) 회칙개정
- 5) 기타 중요 사항

#### 제18조 [이사회]

이사회는 본 회의 임원으로 구성된다.

이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- 1) 총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
- 2) 이사추천 및 상임이사 선출
- 3) 회비 및 기타 부담금 결정
- 4)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- 5) 기타 중요 사항

#### 제19조 [운영위원회]

본 회의 제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, 이사회는 5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선출하고 회장단 및 이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.

- 1) 이사회에서 위임한 회무의 처리
- 2) 분과연구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
- 3) 학술대회 및 학회지 발간에 관한 사항
- 4) 기타 중요 사항

#### 제20조 [회의개최 및 의결정수]

본 학회의 회의는 정회원고 특별회원의 재적인원 1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인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2차 표결하며, 2차 표결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.

## 제 5장 분과연구회

#### 제21조 [분과 구성]

본 학회의 분과는 연구분과, 교육분과로 구성된다. 분과 결성 및 해체는 이사회에서 발의하며,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.

#### 제22조 [분과 사업]

본 학회의 연간사업으로 시행되는 연구 및 교류 활동

- 1) 교육실행 및 행정업무
- 2) 기타 학술활동

#### 제23조 [분과장]

분과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된다.

제24조 [분과연구회 규정]

분과의 규정은 총회에서 결의 또는 개정되며, 개정 절차는 제 18조에 의거한다.

## 제 6장 재정

제25조 [재원]

본 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- 1) 입회비 및 연회비
- 2) 보조금 및 찬조금
- 3) 사업 수익금
- 4) 기타수입

제26조 [회계 연도]
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원칙으로 한다. 단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결산일 이후를 기점으로 당해 연도 총회 개최 직전 월까지를 회계연도로 할 수 있다.

제23조 [분과장]

분과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운영위원회의 일원이 된다.

## 제 7장 지방분회

제27조 [지방분회 설치]

본 회의 지방분회 설치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제28조 [지방분회 조직]

본 학회의 지방분회는 분회장을 포함한 임원을 구성할 수 있으며, 선출된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임을 받는다.

제29조 [지방분회 사업]

본 학회의 연간사업으로 시행되는 연구 및 교류활동  
분과연구회의 지방홍보 및 교육시행  
기타학술활동

제39조 [지방분회 규정]

지방분회의 규정은 본회의 총칙을 따른다.

## 제 8장 보칙

제31조 [정관개정 1]

본 회의 정관은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.

제32조 [정관개정2]

본 회의 정관은 2019년 12월 15일, 총회 참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의결로 제 7장(지방분회) 27조, 28조, 29조, 30조를 개정하였다.

## 제 9장 부칙

제1조 [시행일]

이 회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[시행일 개정]

본 회의 개정된 정관은 201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